대법원 2023도13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중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군○○○ 자금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중 일부, 수원○○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30년, 추징 약 769억 원 등, 피고인 2. 징역 5년)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333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공 소 사 실	1심	원심
피고인1.	1. 가. ○○모빌리티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피고인2. 공모 - 2020. 1. 14.경 피해자 ○○모빌리티가 1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 △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전환사채인수대금 192억 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향군○○○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	유죄	=
	1. 나. ○○모빌리티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2019. 4.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해자 ○○모빌리티 자금 약 208 억 원 횡령	유죄	=
	2. 특경법위반(증재등) - 2019. 10. 31.경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모빌리티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가족회원 지위를 부여하여 금품 공여	유죄	=
	3. 가. 향군○○○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피고인2. 공모	유죄	=

- 2020. 1. 23.경부터 2020. 3. 4.경까지 향군〇〇〇 자금 및 부동산 등 자 산 합계 약 377억 원 횡령		
3. 나. 보람○○○○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피고인2. 공모 - 2020. 3. 4.경 향군○○○ 매각과정에서 보람○○○○ 직원을 속여 향군 ○○○ 인수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 원 교부받아 편취	유죄	Ш
4. 업무방해 - 2020. 3. 5.경부터 2020. 3. 6.경까지 보람○○○○ 직원들의 향군○○○ 인수 관련 실사 업무 방해	무죄	=
5. 무고 - 2020. 3. 18.경 보람○○○○ 직원들을 상대로 건조물침입죄로 허위 고 소하여 무고	무죄	=
6. 티볼○○○○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 2018. 9. 18.경 피해자 티볼○○○○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조달해줄 것 처럼 속여 9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유죄	=
7. ○○○○자산운용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2019. 12. 9.경 ~ 2019. 12. 10.경 피해자 ○○○○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	유죄	=
8. 가. 정치자금법위반 - 2018. 7. 25.경 ~ 2018. 8. 8.경 ○○당 부산 지역위원장인 이○○에게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 기부	무죄	=
8. 나. 양말구매 배임증재 - 2018. 9. 20.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인 이○○에게 회사 인수에 전문건 설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A로 하여금 이○○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증재	유죄	=
8. 다. 이○○ 동생 주식투자 관련 배임증재 ▶ 범죄일람표(3)-1 41,360,000원 유죄, (3)-2 1500만 원 이유무죄 - 2018. 11. 28.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이○○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 동생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56,360,000원을 송금	일부 유죄	=
9. 가. 뇌물공여 - 청와대 행정관 김○○에게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의 뇌물 공여	유죄	=
9. 나.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 청와대 행정관 김○○의 동생을 ○○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 여 명목으로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제3자 뇌물공여	유죄	=
10. 가. 이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범인도피	유죄	=

	10. 나. 심 ○○(신한금융투자 법인투자팀장) 에 대한 범인도피	유죄	=
피고인1.	1. 수원○○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피고인2. 공모 ▶ 범죄일람표(7)-1 206억 원 유죄, (7)-2 35억 원 이유무죄 - 2018. 10. 19.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해자 수원○○ 자금 합계 241 억 원 횡령	일부 유죄	=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회계처리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원○○ 명의로 된 서류 위조·행 사	유죄	=
	3. 범인도피 - 수원○○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	유죄	=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위조·행사	유죄	=
피고인2.	1. 가. ○○모빌리티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피고인1. 공모	유죄	=
	3. 가. 향군○○○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피고인1. 공모	일부 유죄 ¹⁾	일부 유죄 ²⁾
	3. 나. 보람○○○○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 피고인1. 공모	유죄	=
	1. 수원〇〇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 피고인1. 공모	무죄	=

2. 소송경과

- 제1심: 유죄(피고인1. 징역 30년, 몰수, 76,935,400,000원 추징, 피고인2. 징역 5년), 각 일부 무죄
- 원심: 항소기각(피고인1.), 피고인 2. 부분 일부 파기, 유죄(징역 5년)
 - 피고인1.에 대한 원심 주요 판단 요지
 - 유죄 부분
 - · 피고인1.이 피고인2.와 공모하여 △△자산운용이 투자한 ○○모빌리티 전환
 사채인수대금 및 향군○○○의 부동산과 자금 등을 횡령하고, 향군○○○

^{1) 1}심: 범죄일람표(2) 1, 7 유죄, 나머지 2~6, 8~13 이유 무죄

²⁾ 원심: 범죄일람표(2) 1, 7 + 2, 4, 5, 8, 9 추가로 유죄, 나머지 3, 6, 10~13 이유 무죄

매각 과정에서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기고 보람○○○○로부터 인수대금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1.이 △△자산운용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도피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1.이 특경법위반(횡령)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관 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추징 선고는 적법함

■ 무죄 부분

- 업무방해 및 무고죄: 양수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여 실사 권한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의 인수 관련 실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양수인이 실사를 위해 양도인의 사무실에 진입한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 정치자금법위반: 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돈임을 인정하기 부 족함
- •배임증재 중 일부: 청탁과 송금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함
- · 수원〇〇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일부: 기존 횡령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일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것으로 새로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서 별도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상고,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서는 검사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특경법위반(횡령)죄 성립 여부(횡령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등 인정 여부) 및 일부 송금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기망행위, 공모관계 인정 여부)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이 잔금 지급조건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양도인이 계약해제통지를 한 상황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의 실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보호가치 있는 업무인 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무실에 진입한 행 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치자금 인정 여부
- 배임증재죄에서 대가관계 인정 여부
- 원심 양형의 당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

다. 판단 내용(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검사 상고이유 관련
 -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위반, 이○○ 주식투자 관련 배임증재 중 일부, 수원○○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 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원○○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향군○ ○○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의 성립과 공 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 상고이유 관련

-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